

1. 개정 이유

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·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행정안전부 소관 6개의 부령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

2. 개정 주요내용

- 가. (중수청 추가) 행안부 비영리법인 설립·감독 규칙, 행안부 소속청장 지휘규칙
- 나. (가정폭력피해자 주민등록표 교부제한 신청 서류의 근거 법령명 변경) 주민등록법 시행규칙
- 다. (명칭변경)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,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, 민방위법 시행규칙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행정안전부령 제 호

「공소청법」 및 「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제정에 따른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안

제1조(「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)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경찰청장 또는 소방청장”을 “경찰청장, 소방청장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경찰청장 또는 소방청장”을 “경찰청장, 소방청장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)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경찰청장 및 소방청장”을 “경찰청장, 소방청장 및 중대범죄수사청장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경찰청장 및 소방청장”을 “경찰청장, 소방청장 및 중대범죄수사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경찰·소방 분야”를 “경찰·소방·중대범죄수사 분야”로 한다.

제3조(「주민등록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주민등록법 *시행규칙*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2제1항제11호 중 “「검찰사건사무규칙」 제103조제1항”을 “「공소청사건사무규칙」 제103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2호 중 “「검찰사건사무규칙」 제119조제2항”을 “「공소청사건사무규칙」 제119조제2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4호의3 서식 뒤쪽 제13호 중 “「검찰사건사무규칙」 제103조제1항”을 “「공소청사건사무규칙」 제103조제1항”으로 하고, 제14호 중 “「검찰사건사무규칙」 제119조제2항”을 “「공소청사건사무규칙」 제119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4조(「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96호서식 중 “지방검찰청 검사장”을 “수사기관의 장”으로 한다.

제5조(「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지방세징수법 *시행규칙*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7호의2서식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6조(「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

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제1호나목 중 “지방검찰청 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“지방검찰청 지청장”을 “지방공소청 지청장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
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민법」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, <u>경찰청장 또는 소방청장</u> 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경찰청장, 소방청장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</u> ----- -----
제3조(설립허가의 신청)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(이하 “설립발기인”이라 한다)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, <u>경찰청장 또는 소방청장</u> (이하 “주무관청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제3조(설립허가의 신청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경찰청장, 소방청장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</u> (이하 “주무관청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정부조직법」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<u>경찰청장 및 소방청장</u> 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경찰청장, 소방청장 및 중대범죄수사청장</u> ----- -----.
제2조(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) ① <u>경찰청장 및 소방청장</u> (이하 “청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(이하 “장관”이라 한다)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	제2조(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) ① <u>경찰청장, 소방청장 및 중대범죄수사청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법령 제정·개정이 필요한 <u>경찰·소방 분야</u>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	1. ----- <u>경찰·소방·중대범죄수사</u> -----

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3조의2(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·초본 교부제한 신청 등) ① 영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분증명서(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제시하고, 별지 제14호의 3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제3조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	제13조의2(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·초본 교부제한 신청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10. (생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
11. 「검찰사건사무규칙」 제103조제1항에 따른 고소·고발 사건 결정결과통지서	11. 「공소청사건사무규칙」 제103조제1항----- -----
12. 「검찰사건사무규칙」 제11	12. 「공소청사건사무규칙」 제

<u>9조제2항</u>에 따른 사건결정결과 과 증명서 13. · 14. (생략) ② ~ ⑤ (생략)	<u>119조제2항</u>----- ----- 13. · 14.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--	---

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) ①~②(생략) ③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. 1. 시·도협의회 가. (생략) 나. <u>지방검찰청 검사장</u> 다.~차 (생략) 2. 시·군·구협의회 가. (생략) 나. 해당 시·군·구에 소재하는 <u>지방검찰청지청장</u> 또는 그 지청장이 지명하는 검사 다.~자 (생략) 3. (생략)	제2조(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) ①~②(현행과 같음) ③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. 1. 시·도협의회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“ <u>지방공소청장</u> ” 다.~차 (현행과 같음) 2. 시·군·구협의회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해당 시·군·구에 소재하는 “ <u>지방공소청 지청장</u> ” 또는 그 지청장이 지명하는 검사 다.~자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